

1992年度
患者調査 標本 及 調査票 設計

1992



韓國保健社會研究院

提 出 文

保健社會部 長官 貴下

貴部로부터 依賴받은 「1992年度 患者調査 標本設計 및 調査
票 設計에 關한 研究」가 完了되었기에 이 報告書를 提出합니다.

1992. 6. 30.

韓國保健社會研究院長 池 達 顯

研 究 者

研究責任： 宋建鏞（保健研究室長）

研究員： 桂勳邦（責任研究員）

都世錄（主任電算員）

申昌雨（電 算 員）

目 次

I . 結 論	1
1. 背 景	1
2. 目 的	2
3. 研究範圍	3
4. 研究方法	3
II . 標 本 設 計	5
1. 調 查 對 象	5
2. 抽 出 單 位	5
3. 基 礎 資 料	5
4. 抽 出 單 位 醫 療 機 關 的 分 類	6
5. 全 數 調 查 集 團 과 標 本 調 查 集 團	6
6. 標 本 調 查 集 團 中 的 標 本 醫 療 機 關 抽 出	7
7. 標 本 抽 出 結 果 標 本 機 關 數	14
8. 標 本 的 維 持 管 理	16
9. 推 定 方 法	20
III . 調 查 票 補 完	23
1. 調 查 項 目 的 調 整	23
2. 完 成 된 調 查 票	24
3. 調 查 票 作 成 要 領	24
4. 醫 療 機 關 標 本 名 簿	41

附 錄

調 查 票 (안)

I . 結 論

1. 背 景

國民의 疾病傷害와 醫療利用에 關한 統計는 綜合保健計劃의 樹立, 效果的 執行 및 評價 뿐만 아니라 各種 保健醫療人力의 養成과 各種 保健醫療機關 經營 및 行政從事者에게 重要한 資料가 된다.

그러므로, 全國民의 疾病傷害, 醫療利用과 保健醫療서비스를 供給하는 醫療資源(특히 醫療人力과 施設)에 關한 調査가 定期的으로 廣範하게 實施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患者調査는 여러 形態로 實施되어 왔다. 1986년까지 患者調査 (疾病傷害統計調査)는 全國의 모든 醫療機關을 對象으로 特定調査基準日 現在의 各 醫療機關의 實態, 그날의 外來 및 入院患者, 그리고 1個月間의 退院患者들의 疾病名을 包含한 몇가지 項目을 全數調査方法으로 把握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全數調査方法에 의한 調査는 調査對象 및 資料가 尙大함에도 이 調査에 投入되는 人的, 物的 資源의 制限으로 인하여 調査管理, 內容檢査, 資料處理는 물론, 그 結果의 正確性 및 迅速성과 관련하여 많은 問題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實情에서 調査와 관련되는 全體的인 業務量을 合理的 基準으로 輕減시켜 調査管理, 調査票作成 및 資料處理등에 徹底를 기하여 調査結果의 正確성과 迅速성을 向上시킬 수 있는 標本調査方法 開發의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保健社會部는 1988년에는 “疾病傷害統計調査”를 患者調査로 그 名稱을 바꾸면서 調査週기도 3年에서 2年으로 短縮시킴과 동시에

全數調査에서 標本調査로 轉換하기로 決定하고, 醫療施設의 種類別로 合理的 水準의 標本을 抽出하기 위한 標本設計와 標本調査에 適切한 調査票를 開發할 必要性을 認識하여, 이에 대한 研究를 韓國保健社會研究院에 依賴하였다. 이에 따라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은 保健社會部가 患者調査를 成功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調査票 開發과 調査對象 醫療機關의 標本抽出을 擔當하였고, 이 研究結果에 따라 1988年 患者調査가 實施되었다.

이와 같은 節次에 의거한 1988年과 1990年 患者調査는 成功的인 것으로 評價되었고, 이 標本調査의 經驗을 基礎로 1992年 患者調査의 標本設計 및 調査票 補完作業을 하게 되었다.

2. 目 的

가. 患者調査의 目的

(1) 各種 醫療機關의 現況(人力, 病床, 設立主體 등) 把握

(2) 特定日 및 特定期間(1個月間) 各種 醫療機關을 利用한 患者(外來 및 入院)의 量, 疾病構造, 人口學的 特性, 醫療費 支拂方法, 기타 入院 및 退院에 관한 資料蒐集

나. 本 研究의 目的

患者調査의 目的을 保健社會部가 成功的으로 達成케 함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1) 定期的으로 繼續 使用可能하고, 調査目的에 符合되는 必須 項目이 包含되고, 資料處理業務가 容易하도록 1992年度 調査票 및 記載要領의 補完

(2) 資料蒐集 業務量의 輕減, 資料蒐集 努力의 集中, 正確한 資料蒐集 등 非標本 誤差의 極小化 및 醫療機關 種類別 推定이 可能하도록 醫療機關種類別 標本抽出

3. 研究範圍

本 研究의 範圍는 研究目的에 따라 調査票의 補完(記載要領 包含)과 醫療機關 標本抽出로 구분된다.

4. 研究方法

가. 調査票 補完

(1) 調査의 繼續性과 一貫性의 見地에서 1988년부터 使用된 調査票의 調査項目의 必要性, 資料蒐集 可能性과 調査結果의 妥當性, 信賴性 및 正確性を 檢討한다.

(2) 특히 記載上 便宜性과 作成된 調査票의 統計生産過程에서 誤差의 極小化 및 資料處理의 容易性を 提高하는 側面에서 調査票를 補完한다.

나. 標本設計

(1) 標本醫療機關數가 많게 되면 調査管理를 철저히 할 수 없어 調査不能 및 不實調査의 防止가 困難하므로, 標本醫療機關數는 되도록 적게 하되 標本誤差를 考慮하여 合理的인 規模로 한다.

(2) 標本醫療機關수는 적게되더라도 調査票에 記入되는 患者數는 많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醫療機關을 種類 및 特性에 따라 層化하고, 醫療機關數는 적으나 相對的으로 患者數가 많은 層에서는 모든 醫療機關을 標本으로 포함시켜 全數調査를 하며, 기타 層에서는 標本을 抽出한다.

II. 標本設計

1. 調査對象

1992年 患者調査는 그 內容에 따라 機關調査, 外來患者調査, 退院患者調査로 區分되며, 이에 따른 調査對象은 다음과 같다.

醫療機關調査 : 1992. 8. 26 現在 開設중인 全國의 醫療機關

外來患者調査 : 1992. 8. 26에 調査對象 醫療機關에 찾아와서
外來診療를 받은 患者

退院患者調査 : 1992. 6. 1 - 6. 30의 1個月間的 期間中에 調査
對象 醫療機關에서 退院한 患者

2. 抽出單位

醫療機關을 抽出單位로 하여 標本을 抽出하고, 標本으로 抽出된 醫療機關에 대하여 醫療機關調査票, 外來患者調査票, 退院患者調査票를 해당 醫療機關에서 작성한다.

3. 基礎資料

醫療保險管理公團의 1992年 4月 21日 現在の 醫療保險 療養取扱機關 電算화일에 收錄된 26,422個 機關의 資料에 保健所의 下部組織으로 療養取扱機關番號가 별도로 賦與되지 않은 69個의 母子保健센터를 追加하여 總 26,497個의 醫療機關을 抽出單位 醫療機關으로 하였다.

4. 抽出單位 醫療機關의 分類

抽出單位 醫療機關을 그 種類에 따라 綜合病院, 一般病院, 特殊病院, 齒科病院, 韓方病院, 保健醫療院, 保健所, 母子保健센터, 醫院, 齒科醫院, 韓方醫院, 保健支所, 保健診療所, 助産所의 14個 集團으로 分類하였다.

表 1 : 醫療機關의 分類

種類番號	種類	機關數	種類番號	種類	機關數
110	綜合病院	235	170	母子保健센터	74
121	一般病院	330	200	醫院	12,148
122	特殊病院	33	300	齒科醫院	6,058
130	齒科病院	6	400	韓方醫院	3,723
140	韓方病院	42	500	保健支所	1,295
150	保健醫療院	15	600	保健診療所	2,013
160	保健所	251	700	助産所	274

* 總 26,497個 機關

5. 全數調查集團과 標本調查集團

綜合病院, 一般病院, 特殊病院, 齒科病院, 韓方病院, 保健醫療院, 保健所, 母子保健센터의 8個 集團(醫療機關 種類番號의 첫 번째 單位가 1인 集團)은 全數調查集團으로하여, 全數調查集團에서는 總 986個의 醫療機關을 모두 標本으로 抽出하였다.

그리고 나머지의 6個 集團(醫療機關 種類番號의 첫 번째 單位가 2인 集團)은 標本調查集團으로하여, 標本調查集團에서는 層化系統抽出法으로 一部の 醫療機關을 標本으로 抽出하였다.

6. 標本調査集團에서의 標本醫療機關 抽出

6個의 各 標本調査集團에서의 層化 및 抽出率은 市道別 基本資料의 提供, 各 集團의 特殊性, 醫療機關數, 標本誤差의 크기, 資料의 活用性 등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決定하였다.

가. 醫院의 標本抽出

1) 標榜科目 分類番號 賦與

12,148個의 醫院에 대하여 各 醫院의 名稱을 위주로 表2에서와 같이 標榜科目 分類番號를 賦與하였다. 이때 그 名稱만으로 標榜科目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機關에 專門醫가 있으면 專門醫의 種別에 따라 決定하였으며, 專門醫가 없으면 分類不能으로 分類하였다.

表 2: 標榜科目 分類番號

番號	科目名	醫院數	番號	科目名	醫院數
00	分類不能	2,647	13	皮膚泌尿器科	40
01	家庭醫學科	503	14	泌尿器科	382
02	內科	1,393	15	診斷放射線科	208
03	小兒科	1,332	16	結核科	49
04	産婦人科	1,394	17	再活醫學科	23
05	一般外科	1,141	18	治療放射線科	4
06	整形外科	685	19	解剖病理科	7
07	神經外科	167	20	臨床病理科	42
08	胸廓外科	47	21	神經科	43
09	成形外科	123	22	神經精神科	216
10	眼科	481	23	精神科	63
11	耳鼻咽喉科	738	24	癱醉科	77
12	皮膚科	343	..	計	12,148

2) 層化 및 標本抽出

12,148個 醫院을 表3의 層番號 順序로 8個 層으로 層化하였다.

그리고, 20病床 以上인 醫院, 醫師 2名 以上인 醫院, 法人設立 醫院, 特殊科目診療 醫院, 濟州道 醫院의 5個 層(層番號의 첫 번째 單位가 1인 層)은 全數調查層으로 하여, 이 5個 層의 1,640 個 醫院은 모두 標本으로 抽出하였다. 나머지의 3個 層 (層番號의 두 번째 單位가 2인 層)에서는 각각 市道單位의 行政區域番號, 標榜科目番號, 區市郡 單位의 行政區域番號 順序로 整列하고 表3에 提示한 抽出間隔으로 1,352個의 醫院을 標本으로 系統抽出하였다.

表 3 : 醫院의 層別 標本數

層番號	層의 區分	醫院數	標本數	抽出間隔
211	20病床 以上	444	444	1
212	醫師 2名 以上	856	856	1
213	法人設立	68	68	1
214	特殊科目 診療	172	172	1
215	其他 - 濟州道	100	100	1
221	其他 - 大邱市 및 10個 市道	4,591	765	6
222	其他 - 釜山市, 京畿道	2,443	270	9
223	其他 - 서울市	3,484	317	11
	全數 調查 層	1,640	1,640	...
	標本 調查 層	10,508	1,352	...
	計	12,148	2,992	...

- 214 : 50個所 未滿인 標榜科目의 醫院(胸廓外科, 結核科, 再活醫學科, 治療放射線科, 解剖病理科, 臨床病理科, 神經科)
- 221 : 기타 醫院이 275個 - 703個인 市道(大邱, 仁川, 光州, 大田,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 223 : 기타 醫院이 1,118個 - 1,315個인 市道

나. 齒科醫院의 標本抽出

6,058個 齒科醫院을 表4의 層番號 順序로 7個 層으로 層化하였다. 그리고, 病床이 있는 醫院, 醫師 2名 以上인 醫院, 濟州道 醫院의 4個 層(層番號의 첫번째 單位가 1인 層)은 全數調查 層으로 하여, 이 4個 層의 235個 齒科醫院은 모두 標本으로 抽出하였다. 나머지의 4個 層(層番號의 두번째 單位가 2인 層)에서는 各各 市道 및 區市郡 單位 行政區域番號 順序로 整列하고, 表 4에 提示한 抽出間隔으로 582個 齒科醫院을 標本으로 系統抽出 하였다.

表 4 : 齒科醫院의 層別 標本數

層番號	層의 區分	醫院數	標本數	抽出間隔
311	病床있음	14	14	1
312	醫師 2名 以上	149	149	1
313	法人設立	10	10	1
314	其他 - 濟州道	62	62	1
321	其他 - 大田市 및 3個 道	540	90	6
322	其他 - 釜山市 및 3個 市道	3,030	379	8
323	其他 - 서울市	2,253	113	20
	全數 調查 層	235	235	...
	標本 調查 層	5,283	582	...
	計	6,058	817	...

321 : 기타 齒科醫院이 116個 - 173個인 市道(大田, 江原, 忠北 忠南)

322 : 기타 齒科醫院이 188個 - 675個인 市道(釜山, 大邱, 仁川 光州, 京畿, 全北, 全南, 慶北, 慶南)

다. 韓方醫院의 標本抽出

3,723個 韓方醫院을 表5의 層番號 順序로 8個 層으로 層化하였다. 그리고, 病床이있는 醫院, 醫師 2名 以上인 醫院, 法人設立 醫院, 濟州道 醫院의 4개 層(層番號의 첫번째 單位가 1인 層)은 全數調查層으로 하여, 이 4個 層의 104個 韓方醫院은 모두 標本으로 抽出하였다. 나머지의 4개 層(層番號의 두번째 單位가 2인 層)에서는 各各 市道 및 區市郡 單位의 行政區域番號 順序로 整列하여, 表5에 提示한 抽出間隔으로 487個의 韓方醫院을 標本으로 系統抽出하였다.

表 5 : 韓方醫院의 層別 標本數

層番號	層의 區分	醫院數	標本數	抽出間隔
411	病床있음	59	59	1
412	醫師 2名 以上	29	29	1
413	法人設立	3	3	1
414	其他 - 濟州道	13	13	1
421	其他 - 光州市 및 3個 道	269	68	4
422	其他 - 仁川市 및 4個 市道	735	123	6
423	其他 - 釜山市 및 3個 市道	1,374	113	8
424	서울시	1,241	124	10
	全數 調查 層	104	104	...
	標本 調查 層	3,619	487	...
	計	3,723	591	...

- 421 : 기타 韓方醫院이 55個 - 83個인 市道(光州, 江原, 忠北, 全南)
- 422 : 기타 韓方醫院이 116個 - 184個인 市道(仁川, 大田, 忠南, 全北, 慶北)
- 423 : 기타 韓方醫院이 311個 - 418個인 市道(釜山, 大邱, 京畿, 慶南)

라. 保健支所の 標本抽出

1,275個의 保健支所를 表6의 層番號 順序로 3個 層으로 層化하였다. 그리고, 病床이 있는 保健支所 및 保健支所가 12個 以下인 市道의 2個 層(層番號의 첫번째 單位가 1인 層)은 全數調査層으로 하여, 이 2個 層의 53個 保健支所는 모두 標本으로 抽出하였다. 나머지의 14個 層(層番號의 두번째 單位가 2인 層)에서는 市道 單位의 行政區域番號, 醫師數, 區市郡 單位의 行政區域番號 順序로 整列하여, 表6에 提示한 抽出間隔으로 204個의 保健支所를 標本으로 系統抽出하였다.

表 6 : 保健支所の 層別 標本數

層番號	層의 區分	醫院數	標本數	抽出間隔
511	病床있음	42	42	1
512	기타 - 釜山市 및 4個 市道	31	31	1
521	기타 - 京畿道 및 7個 市道	1,222	204	6
	全數 調査層	73	73	...
	標本 調査層	1,222	204	...
	計	1,295	277	...

512 : 保健支所가 12個 以下인 市道(釜山, 仁川, 光州, 大田, 濟州)

521 : 保健支所가 86個 - 221個인 市道(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마. 保健診療所の 標本抽出

2,013個 保健診療所를 表7의 層番號 順序로 3個 層으로 層化하였다. 그리고, 病床이 있는 保健診療所 및 保健診療所가 16個 以下인 市道의 2個 層(層番號의 첫번째 單位가 1인 層)은 全數調査層으로 하여, 이 2個 層의 120個 保健診療所는 모두 標本으로 抽出하였다. 나머지의 1個 層(層番號의 두번째 單位가 2인 層)에서는 市道 및 區市郡 單位의 行政區域番號 順序로 整列하여, 表7에 提示한 抽出間隔으로 189個의 保健診療所를 標本으로 系統抽出하였다.

表 7 : 保健診療所の 層別 標本數

層番號	層의 區分	醫院數	標本數	抽出間隔
611	病床있음	45	45	1
612	기타 - 釜山市 및 4個 市道	75	75	1
621	기타 - 京畿道 및 7個 市道	1,893	189	10
	全數 調査 層	120	120	...
	標本 調査 層	1,893	189	...
	計	2,013	309	...

612 : 保健診療所가 16個 以下인 市道(釜山, 仁川, 光州, 大田, 濟州)

621 : 保健診療所가 129個 - 330個인 市道(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바. 助産所의 標本抽出

274個 助産所를 表8의 層番號 順序로 3個 層으로 層化하였다. 그리고, 病床이 있는 助産所 및 助産所가 16個 以下인 市道の 2個層 (層番號의 첫번째 單位가 1인 層)은 全數調査層으로 하여, 이 2個 層의 70個 助産所는 모두 標本으로 抽出하였다. 나머지의 1個 層(層番號의 두번째 單位가 2인 層)에서는 市道 및 區市郡 單位의 行政區域番號 順序로 整列하여, 表8에 提示한 抽出間隔으로 51個의 助産所를 標本으로 系統抽出하였다.

表 8 : 助産所의 層別 標本數

層番號	層의 區分	醫院數	標本數	抽出間隔
711	病床있음	11	11	1
712	기타 - 大邱市 및 8個 市道	59	59	1
721	기타 - 서울市 및 7個 市道	204	51	4
	全數 調査 層	70	70	...
	標本 調査 層	204	51	...
	計	274	121	...

712 : 助産所가 16個 以下인 市道(釜山, 仁川, 光州, 大全, 濟州)

721 : 助産所가 21個 - 57個인 市道(京畿, 江原,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7. 標本抽出結果 標本機關數

醫療機關分類	層 番號	機關數	抽出 間隔	標本 機關數	市道別 範圍
綜合病院	110	235	1	235	
一般病院	121	330	1	330	
特殊病院	122	33	1	33	
齒科病院	130	6	1	6	
韓方病院	140	42	1	42	
保健醫療院	150	15	1	15	
保健所	160	251	1	251	
母子保健센터	170	74	1	74	
一般醫院					
- 20病床 以上(全國)	211	444	1	444	
- 醫師 2名 以上(全國)	212	856	1	856	
- 法人設立(全國)	213	68	1	68	
- 特殊科目 診療(全國)*	214	172	1	172	
- 濟州道	215	100	1	100	
- 大邱市 및 10個 市道	221	4,591	6	765	275-703
- 釜山市, 京畿道	222	2,433	9	270	1,118-1,315
- 서울市	223	3,484	11	317	
齒科醫院					
- 病床있음(全國)	311	14	1	14	
- 醫師 2名 以上(全國)	312	149	1	149	
- 法人設立(全國)	313	10	1	10	
- 濟州道	314	62	1	62	
- 大田市 및 3個 道	321	540	6	90	116-173
- 釜山市 및 8個 市道	322	3,030	8	379	188-675
- 서울市	323	2,253	20	113	

特殊科目: 胸廓外科, 結核科, 再活醫學科, 治療放射線科,
解剖病理科, 臨床病理科, 神經科(全國 醫院數 50個所
未滿인 경우)

醫療機關分類	層 番號	機關數	抽出 間隔	標本 機關數	市道別 範圍
韓方醫院					
- 病床있음(全國)	411	59	1	59	
- 醫師 2名 以上(全國)	412	29	1	29	
- 法人設立(全國)	413	3	1	3	
- 濟州道	414	13	1	13	
- 光州市 및 3個 道	421	269	4	68	55-83
- 仁川市 및 4個 市道	422	735	6	123	116-184
- 釜山市 및 3個 市道	423	1,374	8	172	311-418
- 서울시	424	1,241	10	124	
保健支所					
- 病床있음(全國)	511	42	1	42	
- 釜山市 및 4個 市道	512	31	1	31	
- 京畿道 및 7個 道	521	1,222	6	204	86-196
保健診療所					
- 病床있음(全國)	611	45	1	45	
- 부산市 및 4個 市道	612	75	1	75	
- 京畿道 및 7個 道	621	1,893	10	189	129-330
助産所(全國)					
- 病床있음	711	11	1	11	
- 大邱市 및 8個 市道	712	59	1	59	
- 서울시 및 5개 시도	721	204	4	51	21-57
全數 調査層		3,222		3,222	
標本 調査層		23,269		2,866	
계		26,497		6,093	

8. 標本の 維持 管理

가. 標本醫療機關의 變動 및 有故에 대한 處理

標本醫療機關은 醫療保險管理公團의 1992年 4月 21日 現在의 醫療保險 療養取扱機關 電算화일에 收錄된 醫療機關 중에서 抽出한 것이며 實際 調査는 1992年 8月 26日에 實施하게 되므로, 調査 當時에는 醫療機關의 閉業, 休業, 移轉 등의 變動이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不應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實查過程에서는 이러한 變動 및 有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

1) 閉業 및 休業의 경우

閉業 또는 休業으로 調査가 不可能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有故로 處理한다.

- ① 調査票 I (機關調査)에 1項(機關名), 2項(所在地), 3項(電話番號), 6項(標本番號), 7項(醫療保險療養取扱機關番號), 18項(調査結果)의 6個 項目만을 記入하여 提出한다 (調査票 II와 調査票 III도 이와 같은 基本事項만을 記入하여 提出한다).
- ② 醫療機關 標本名稱에서 該當 醫療機關의 調査結果 項目에 該當 有故事項을 表示한다(閉業 또는 休業에 表示).

2) 移轉의 경우

- ① 同一保健所(保健醫療院)의 管轄區域안에서 移轉한 경우에는 有故로 處理하지 않고 그대로 調査한다. 이때, 醫療機關 標本名稱에서 所在地등의 變更 內容만 修正한다.
- ② 다른 保健所(保健醫療院)의 管轄區域으로 移轉한 경우에는 閉業으로 處理한다.

3) 調査不應의 경우

調査不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有故로 處理한다.

- ① 調査票 I (機關調査)에 1項(機關名), 2項(所在地), 3項(電話番號), 6項(標本番號), 7項(醫療保險療養取扱機關番號), 18項(調査結果)의 6個 項目만을 記入하여 提出한다 (調査票 II와 調査票 III도 이와 같은 基本事項만을 記入하여 提出한다).
- ② 醫療機關 標本名稱에서 該當 醫療機關의 調査結果 項目에 該當 有故事項을 表示한다 (不應에 表示).

4) 休診의 경우

1992年 8月 26日에 休診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

- ① 調査票 I (機關調査)은 休診始作 前日을 基準으로 作成한다.

- ② 調査票Ⅱ(外來患者)에는 1項(機關名), 3項(標本番號), 4項(醫療保險療養取扱機關番號)의 3個項目만을記入하고, 調査票右側上段의 12項(調査票매수)의欄의 바로 위에 "休診"이라記入한 다음, 休診期間을記入한다.
- ③ 調査票Ⅲ(退院患者)에는 該當事項을記入한다.

나. 管轄區域 외의 機關에 대한 處理

醫療機關 標本名簿에 다른 保健所 管轄區域의 醫療機關이 收錄되어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

- ① 醫療機關 標本名簿의 資料處理番號 左側에 "X"의 表示를 하고 所在地 右側에 該當 區市郡 保健所 이름을 記入한다. 調査結果에는 移轉으로 表示한다.
- ② 該當 區市郡 保健所에 處理番號를 除外한 모든 內容(標本番號, 療養記號, 機關名稱, 代表者, 電話番號, 所在地)를 通報한다.
- ③ 通報받은 保健所에서는 醫療機關 標本名簿에 資料處理番號를 除外한 모든 事項을 記入하고, 調査票를 配付하여 調査한다.

다. 新規 追加 醫療機關에 대한 處理

新規 追加 醫療機關이라함은 1992年 8月 26日 現在의 醫療機關으로 各 保健所 또는 保健醫療院별로 提供되는 醫療機關名簿(1992年 4月 21日 現在 醫療保險管理公團의 醫療保險 療養取扱機關 電算화일에 收錄된 醫療機關 名簿)에 收錄되지 않은 醫

療機關을 말한다. 이 名簿에 收錄되지 않은 이유로는 醫療保險 療養取扱機關 未指定, 1992年 4月 21日 以後의 新規開設(1992年 4月 21日 直前の 新規開設도 該當되는 경우가 있음), 기타의 新規 등을 들수 있다.

- ① 이러한 新規 追加 機關이 있을때에는 모두 醫療機關 標本名簿에 該當事項을 追加 記入하고 調査票를 配付하여 調査한다.
- ② 醫療機關 標本名簿에 追加記入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記入한다.
 - 資料處理番號는 記入하지 않는다.
 - 標本番號는 左側의 3개 單位는 記入하지 않고, 右側의 3개 單位만 記入하되 901번부터 一連番號를 記入한다.
 - 療養記號는 指定機關일때만 記入한다.
 - 機關名稱, 代表者名, 電話番號, 所在地는 모두 記入한다.

9. 推定方法

가. 醫療機關 種類別 推定

1) 總數의 推定

醫療機關의 14開 種類別로 各各 어떤 特性 X를 갖는 患者(또는 다른 어떤 集計單位)의 總數推定値는 다음과 같이 算出한다.

$$X'_h = \sum_i (N_{hi} / n_{hi}) \sum_a X_{hia} + \sum_b X_{hib} \quad \dots (1)$$

이 公式에서

h = 醫療機關의 種類를 나타내는 添字

i = 層을 나타내는 添字

a = 標本으로 抽出된 醫療機關을 나타내는 添字

b = 新規 追加 醫療機關을 나타내는 添字

X' = 特性 X를 갖는 患者의 總數推定値

X = 特性 X를 갖는 것으로 調査된 患者數

N = 抽出單位 醫療機關數

n = 標本으로 抽出된 醫療機關數

여기서 綜合病院, 病院, 齒科病院, 韓方病院, 保健醫療院, 保健所, 母子保健센터의 경우(層番號의 첫번째 單位가 1인 경우)에는 $i = 1$ 뿐이며, $N = n$ 이 된다. 그리고 醫院, 齒科醫院, 韓方醫院, 保健支所, 保健診療所, 助産所의 경우(層番號의 첫번째 單位가 2 以上인 경우)에는 層番號의 두번째 單位가 1이면 $N = n$ 이고, 1이 아니면 $N > n$ 이다.

2) 分散의 推定

X'_h 에 대한 分散은 다음과 같이 算出한다.

$$\text{var}(X'_h) = \sum_a M_{hi} \sum_a (X_{hia} - X_{hia+1})^2 \quad \dots (2)$$

$$M_{hi} = \frac{N_{hi} (N_{hi} - n_{hi})}{2 n_{hi} (n_{hi} - 1)} \quad \dots (3)$$

$$i = 1, 2, \dots, n_{hi} - 1$$

이 公式에서, var = 分散을 나타내는 記號

3) 標本誤差 및 相對標準誤差의 推定

X'_h 에 대한 標準誤差와 相對標準誤差는 各各 다음과 같이 算出한다.

$$\text{標準誤差} \quad : \quad \text{se}(X'_h) = \text{var}(X'_h)^{1/2} \quad \dots (4)$$

$$\text{相對標準誤差} \quad : \quad \text{res}(X'_h) = 100 \text{se}(X'_h) / X'_h \quad \dots (5)$$

나. 全國推定

特性 X를 갖는 患者의 全國 總數推定値와 이에 대한 分散, 標準誤差, 相對標準誤差는 各各 다음과 같이 算出한다.

總數推定値 : $X' = \sum_h X'_h$

分散 : $\text{var}(X') = \sum_h \text{var}(X'_h)$

標準誤差 : $\text{se}(X') = \text{var}(X')^{1/2}$

相對標準誤差 : $\text{var}(X') = 100 \text{ se}(X') / X'$

Ⅲ. 調査票 補完

1. 調査項目의 調整

가. 調査票 I (機關調査)

調査項目 増減은 없다. 다만 資料處理의 便宜를 위하여
⑤資料處理番號 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 □□□

나. 調査票 II (外來患者調査)

調査項目의 増減도 layout의 수정도 없다. 다만 ②資料
處理番號 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 □□□

다. 調査票 III (退院患者調査)

退院患者調査票는 作成上 便宜와 統計의 正確性を 기하기
위하여 退院 event 發生當日에 作成되고 月末에 별도로 취합 報
告할 수 있도록 記載項目을 다음과 같이 添加한다.

◦ 퇴원환자수: □□□□명
◦ 퇴원환자가 없는 경우의 사유: 0. 입원진료 가능하나 퇴원환자 없었음 1. 입원진료 불가능 2. 폐업 3. 휴업 4. 이전 5. 기타
◦ 비고(폐업의 경우 폐업일자, 휴업의 경우 휴업일자, 이전의 경우 이전일자 및 이전장소 등을 기입)

2. 完成된 調査票

이와 같은 조사표의 조사항목의 조정 및 보완을 거쳐 완성된 조사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3. 調査票 作成要領

가. 일반적인 주의사항

(1) 본 조사는 통계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질병상해의 양상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이용량을 파악하려는 순수 보건통계생산의 목적만을 가지므로 조사표 작성시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유의한다.

(2) 조사표 작성은 청색이나 흑색 볼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잘못 기재되었을 때에는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정정한 후 작성자가 날인한다.

(3) 배부된 조사표 용지이외의 추가 조사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의료기관별로 복사하여 사용한다.

(4) 「기재안함」으로 표시된 난 (보기: 외래 및 퇴원환자조사환자주소증 지역번호 등)을 제외한 모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토록 한다.

(5) 조사표 기재시 글자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글씨는 또박또박 알아보기 쉽게 쓰도록 한다.

(6) 각 의료기관별로 완료된 조사표의 최종점검은 반드시 기관조사표 작성자 직명 및 작성자 성명에 기재·날인한 사람이 하도록 하며, 특히 오기되었거나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7) 조사표는 모든 조사대상 의료기관에서 조사표 I(기관조사), 조사표 II(외래환자) 및 조사표 III(퇴원환자)의 3가지 조사표가 모두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병상은 있으나, 퇴원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표 III(퇴원환자)에는 일반사항만 기입하여 제출한다.

나. 조사표 I (기관조사)

이 조사표는 1992년 8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의료기관마다 1매씩 작성한다.

- ① 기관명:
 - 개설허가된 의료기관의 명칭을 기재한다.
- ② 소재지:
 - 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주소를 기재한다.
- ③ 전화번호:
 - 각 의료기관의 대표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④ 개설일자: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년월일을 기재한다.
- ⑤ 자료처리번호:
 - 보건사회부에서 조사표를 접수할 때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 ⑥ 표본번호:
 - 보건소(보건의료원) 기입사항으로 의료기관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 이 항목은 각 의료기관별 고유번호로서 표본추출, 현지조사 및 자료처리의 편의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 번호는 6단위로 구성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첫 세자리는 표본층(의료기관종류)번호이며 다음 세자리는 층내 일련번호이다.

보기: □□□ - □□□

층번호 일련번호

- 각 조사표 용지마다 동일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각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표본번호는 각 구시군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 배부된 1992년 환자조사 의료기관 표본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 각 보건소는 동 표본명부에 의거하여 표본번호를 조사대상 의료기관에 통지한다.
- ⑦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번호:
- 의료보험단체가 각 의료기관에 부여한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번호를 매 조사표 용지마다 동일하게 기재한다.
- ⑧ 설립구분:
- 주어진 보기의 해당번호에 ○표를 하고, 그 번호를 해당난에 기재한다.
 - 여기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모자보건센터는 '공립'으로 구분한다.

⑨ 가동병상수

- 허가된 병상수가 아닌 실제 가동가능한 병상수를 기재한다.
- 병상은 일반병상과 신생아병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총 병상수를 합하여 기재한다.
- 일반병상이나 신생아병상이 없는 경우 각각 ○으로 표시한다. 신생아 병상에는 인큐베이터(보육기)가 포함된다.

⑩ 종사자수

- 이 항목은 의사 1인당 인구수와 같은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 정규직 및 일반직, 상근자 및 비상근무자의 구분없이 모두를 포함하여 1992. 8. 26.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분류 내용에 따라 기입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계를 기입한다.
- 의사는 전문의,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일반의로 다시 구분한다.

11 외래환자수(1992. 8. 26의 1일간)

- 외래환자 조사표의 작성을 완료한 후에, 외래환자조사표에 기입된 외래환자수 총수를 기입한다.
- 주의사항
 - 외래환자조사표에 기입된 환자의 수를 의무기록실, 원무과 또는 관련 부서에서 작성·보관하는 일일외래환자 집계표와 같은 관계자료와 대조·확인한다.
 - 2개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외래조사표에 기입누락 및 착오여부를 확인하여 보완한다.

12 입원환자수

- 1992. 8. 26. 24:00 현재 입원중인 환자수를 (1) 1992. 8. 29. 당일에 입원한 환자와 (2) 그 이전부터 입원하고 있는 환자(재원)로 나누어 기입한다.
- 주의사항
 - 입원환자수는 조사기준일의 관계 통계자료에 의존하여 기입하게 된다.
 - 참고 가능한 자료로는 일일 입·퇴원환자집계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입원환자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1992. 8. 26. 당일의 입원환자수보다는 1992. 8. 26. 24:00 현재의 재원환자수의 파악이다.
 -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병원이나 소규모의 병원에서 재원환자의 명확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간혹 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고, 재원환자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조사기준시점 이전에 각 병실의 간호사나 기타 담당자와 사전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다.

13 퇴원환자수(1992. 6. 1-6. 30. 의 1개월간)

- 퇴원환자조사표의 작성을 완료한 후에, 월간 퇴원환자수의 총계를 기입한다.

- 주의사항
 - 퇴원환자조사표에 기입된 환자의 수를 의무기록실, 원무과 또는 관련 부서에서 작성·보관하는 일일퇴원환자 집계표와 같은 관계자료와 대조·확인한다.
 - 2개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퇴원환자조사표에 기입 누락 및 착오여부를 확인하여 보완한다.

14 조사표 매수

- 외래환자조사표: 외래환자조사표 12 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표 매수를 기입한다.
- 퇴원환자조사표: 퇴원환자조사표 20 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표 매수를 기입한다.

15 작성자 직명

- 조사표를 실제 작성한 사람의 직명을 기재한다.
- 여기에서 작성자가 의무기록사인 경우 반드시 의무기록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해당되며, 의무기록업무를 맡았다 해도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명을 기재한다.

16 작성자 성명

- 실제로 조사표를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쓰고 날인한다.

17 대표자 성명

-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18 조사결과

- 보건소 기입사항으로 의료기관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 보건소장은 관할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항목에 ○표한다.
- 조사표 작성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그 조사표를 보건사회부에 제출한다.

19 보건소장 검토

- 보건소 기입사항으로 의료기관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 보건소에서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각 의료기관의 고유번호를 파악할 수 있는 표본번호나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번호 등이 누락되었는지의 여부이다.
 - 둘째, 각 조사표에 기재될 내용들이 제대로 빠짐없이 기재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셋째, 조사표 내용이 일관적인가를 확인한다. 즉 기관 조사표의 외래환자나 퇴원환자집계수가 외래환자표나 퇴원환자조사표에 기재된 총수와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 이와같은 확인을 거쳐 누락이나 오기 등 불성실한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이를 재작성하도록 조치하고 수정된 조사표에 대해 다시 내용을 검토한 후 保健소장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한다.

다. 조사표 II(외래환자)

이 조사표에는 1992년 8월 26일(00:00-24:00)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전원을 기입한다.

- * 본 조사에서 외래환자란 조사기준당일 조사대상 의료기관에 찾아온(응급실 포함) 환자중 12시간이내 체류한 환자를 말한다.
- * 1992. 8. 26 당일 휴진인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휴진으로 처리한다.
- * 외래환자에는 조사팀이 실태조사(예: 결핵, 기생충 등)를 위하여 표본조사구를 방문하여 검진한 수는 제외되지만, 협회부속병원에 찾아와 검진 또는 진료받은 환자는 포함된다.

① 기관명(의료기관 명칭):

- 조사표 I의 ①항의 기관명을 그대로 기입한다.

② 자료처리번호:

- 보건사회부 기입사항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③ 표본번호:

- 보건소 기입사항으로 의료기관에서는 기입하지 않는다.

④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번호:

- 조사표 I의 ⑦항과 동일한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⑤ 일련번호:

- 아라비아숫자(1, 2, 3, 4, ...)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일련번호란 조사대상이 된 외래환자를 외래환자조사표에 기재한 순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일련번호는 조사표 작성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작성후 일련번호의 마지막 번호는 외래환자 총수에 해당한다.
- 일련번호는 진료 Chart 고유번호가 기재되는 진료번호와는 다른 것이다.

⑥ 성별:

- 남자이면 1, 여자이면 2로 기재한다.

⑦ 생년월 또는 연령:

- 이 문항은 환자의 정확한 연령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가능한 생년월을 기재한다.
- 생년월의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연령을 기재한다.
- 의료보험환자의 경우는 생년월의 기재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그러나 일반환자나 응급환자의 경우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만연령을 기재토록 한다.

⑧ 환자주소:

- 이 항목은 어느 지역의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환자의 주소를 시도 및 구시군 단위까지 기입한다.(단, 지역번호는 기입하지 않는다)

- 주소는 시도의 기입란과 구시군의 기입란으로 구분되어 있다.
- 구시군 단위는 구인지, 시인지, 군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xx구, xx시, xx군과 같이 기입한다.
 - “경북, 경주”라고만 기입하면 경주시인지 경주군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⑨ 질병분류:

- 환자의 질병명 및 3단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1979) 19-66페이지에 의거하여 기재토록 한다.
- 외래환자의 질병명은 1가지만 기재한다. 조사기준당일 의료기관에 외래방문하게 된 주된 이유가 되는 질병이나 사유(예방접종, 검진 등)를 기재한다.
 - 단, 한방기관의 경우 분류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⑩ 진료비 지불방법

- 진료비 지불방법은 6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번호에 ○표시한다.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1. 전액자비

어떠한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등의 혜택이 없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일반환자를 말한다. 그러나 의료보험 가입자라도 어떤 사유이든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면 전액자비에 해당한다.

2. 의료보험

직장이나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이나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의료비의 일부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의료보험단체에서 지불해주는 것을 말한다.

3. 의료보호

의료보호대상자로 정해져 국가가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부조적용자도 이에 포함시킨다.

4. 산재보험

의료비 지불시 산업재해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5.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불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6. 기타

1-5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다. 예컨대 농협공제보험이나 생명보험회사 및 정당등에서 실시하는 유사의료보험 등이 포함된다.

11 진료기록번호:

- 각 의료기관에서 작성 보관하고 있는 진료차트나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환자의 진료 「기록부 번호」를 기재한다.

12 조사표 매수

- 각 조사표마다 번호를 부여하며 각 조사표별 총매수를 확인한 후 각 장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를 기재한다.

㉠ 2매인 경우: 첫번째 장에는 2매중 1매
두번째 장에는 2매중 2매

㉡ 5매인 경우: 첫번째 장에는 5매중 1매
두번째 장에는 5매중 2매

13 작성자 직명 및 14 작성자 성명

- 조사표를 실제 작성한 사람이 자기의 직명 및 성명을 쓰고 날인하되, “조사표 첫장”에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 따라서 외래환자조사표가 각 외래진료실별로 작성된 경우, 작성자 직·성명은 각기 다를 수가 있다.

라. 조사표 Ⅲ(퇴원환자)

이 조사표에는 199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1개월) 간에 퇴원한 환자 전원을 기입한다.

* 여기에서 질병이 없는 정상 신생아는 퇴원환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① 기관명 - ⑧ 환자주소:

- 조사표 Ⅱ(외래환자)의 제①항에서 제⑧항까지의 작성요령과 같이 기재한다.

⑨ 질병분류:

- 질병명 및 3단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1979) 19-66페이지에 의거하여 기재한다.
- 환자가 여러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질병명은 3가지까지 기재하도록 한다. 질병명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1)에만 기재하고, 둘이상이면 (3)까지 기재하여 분류번호도 각각 기재한다.
- 질병분류 (1)에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된 직접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이유(건강진단등)를 말하며 (2) 및 (3)의 기타진단명이란 (1)의 주진단명을 제외한 질병명을 기재한다.

⑩ 입원년월일:

- 199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중 퇴원한 환자의 입원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한다.

11 6월 퇴원일자:

- 199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중 환자가 퇴원한 날짜를 기재한다.

12 치료결과:

- 퇴원할 당시의 환자의 치료상태를 다음의 구분내용에 따라 해당번호에 한곳에만 ○표시한다.
- 이때 환자의 치료결과는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를 기준한다.
- 이 항목의 기재는 환자기록부중 앞장에 첨부된 퇴원환자 요약기록 등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다.
 1. 완(경)쾌
 2. 호전안됨
 3. 진단뿐
 4. 가망없는 퇴원
 5. 사망

13 퇴원형태

- 퇴원시 형태에 따라 해당번호에 ○표시한다.
 1. 정상퇴원
 2. 자의퇴원
 3. 전원
 4. 탈원
- 2. 자의퇴원은 환자나 가족이 원해서 퇴원한 형태이다. 이 경우에는 차트중에 “치료사절서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표시한다.
- 3. 전원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것이며 의뢰서 등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표시한다.
- 4. 탈원은 정상적인 퇴원수속절차를 밟지 않고 몰래 도망간 경우등이 포함된다.

14 입원경로

- 입원당시 1. 외래를 통했는지 2. 응급실을 통했는지 또는 3. 기타(신생아 포함) 다른 방법으로 입원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 3. 기타에서 신생아는 출산후 곧 질병이 있어 별도로 입원했던 경우만 포함되며, 질병없는 정상 신생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장기만성환자가 외래나 응급실을 경유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입원했다 퇴원하는 경우도 기타에 포함된다.

15 내원경위

- 1. 직접내원과 2. 타의료기관에서 의뢰한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타의료기관에서 의뢰된 경우는 의뢰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만 포함시킨다.

16 진료비 지불방법

- 조사표 Ⅱ의 ⑩항과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한다.

17 진료기록번호

- 조사표 Ⅱ의 11 항과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한다.

18 퇴원환자수

- 199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중 총퇴원환자수를 기재한다.
- 이 항목은 퇴원이 일어난 당일에 조사표 Ⅲ(퇴원환자)이 작성되도록 조사절차가 변경됨으로써 이번에 신설된 것이다.

19 퇴원환자가 없는 경우의 사유

- 병상은 있으나, 6.1-6.30 기간에 퇴원환자가 없는 경우에 그 사유에 따라 다음 해당란에 ○표한다.

0. 입원진료 가능하나 퇴원환자 없음.

1. 입원진료 불가능

2. 폐업

3. 휴업

4. 이전

5. 기타

* 특히 폐업, 휴업, 이전인 경우에 폐업, 휴업, 이전 년월 일을 기재한다.

20 조사표매수

- 조사표 Ⅱ의 12 항과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한다.

21 작성자 직명 및 22 작성자 성명

- 조사표 Ⅱ의 13 항, 14 항과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한다.

**** 본 조사의 작성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할 보건소 및 보건사회부 통계담당관실
(전화 02-503-7526)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4. 醫療機關 標本名簿

환자조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기관은 保健所 및 保健醫療院이다. 그러므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이 환자조사 수행과정에서 조사표의 배부, 수집, 점검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에 도움이 될 「1992년 환자조사 의료기관 표본명부」를 배부하고, 이 명부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동 「표본명부」에 「조사결과」란을 신설하여 이 명부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의 「표본번호」를 부여하고, 조사표를 배부하고, 수집된 조사표의 점검결과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표본명부」의 활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 (1) 환자조사에 있어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은 관내 전체 조사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사표 배부, 표본번호 부여, 작성된 조사표의 접수 및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같은 업무는 「1992년 환자조사 의료기관 표본명부」(이하 표본명부라고 칭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2) 표본명부에는 관내의 조사해야 할 의료기관의 표본번호, 요양기호(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번호), 기관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조사결과, 조사표 매수 등의 항목이 있다.
- (3) 보건소는 조사대상 의료기관에 조사표를 배부할 때 반드시 「표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 표본번호는 여섯자리로 되어 있고, 조사대상 각 의료기관에 고유번호가 주어져 있다.

(예) 서울적십자병원

1	1	0	-	0	0	4
분류번호				일련번호		

- 의료기관 분류번호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전수(全數) 또는 표본조사여부에 따라 부여한 것이다.
- 분류번호의 첫번째 단위가 1이거나 두번째 단위가 1이면 전수조사기관임을 나타내며, 기타의 경우는 표본조사기관임을 나타낸다.

(4)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조사가 완료된 이후 보건소에서는 작성 완료된 조사표를 접수하여 그 결과를 「조사결과」의 해당란에 ○표시한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6개항 (완, 폐, 휴, 이, 불, 기) 중 하나에 ○표한다.

완 = 「조사완료」의 약자

기관조사표에 기재된 외래환자수 및 퇴원환자수가 관계조사표에 기입된 환자수와 일치하는지와, 기타 조사항목에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없는지 확인하여 착오가 없는 경우에 「완」에 ○표시한다.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표 보완을 지시한다.)

다음 5개 항목은 조사불능의 사유와 관련된다.

폐 = 「폐업」의 약자

폐업계를 제출한 경우

휴 = 「휴업」의 약자

휴업계를 제출하여 일정기간 휴업상태에 있는 경우

이 = 「이전」의 약자

관할구역 밖의 기관으로 관할 보건소에 통보한 경우

불 = 「조사불응」의 약자

조사거부 또는 불응으로 인한 조사불능상태

기 = 「기타」의 약자

단기간 휴진의 상태(상을 당하거나 단기휴가 등의 이유로)

- (6) 폐업, 휴업, 이전, 불응, 기타의 조사불능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해당의료기관의 조사표는 보사부에 제출해야 한다.
- (7) 조사완료기관에 대하여 환자수를 외래 - 입원 - 퇴원의 순서로 기입한다.
- (8) 의료기관에서 조사완료된 조사표와 「표본명부」를 함께 보건사회부에 제출한다.

- (9) 이상 「표본명부」의 활용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건소(환자조사 전담요원 지명)



표본명부에 의거 「표본번호」 부여
조사대상 의료기관에 조사표 배부



완료된 조사표 점검 「조사결과」 및 환자수 기입



보사부에 관계자료 송부(표본명부 및 조사표)



(조사업무 종결)

附 錄

보건사회부
1992년 환자조사 조사표 I (기관조사)

통계법 제 3 조 : 129-21-55
일반통계승인번호

이 조사는 통계법에 의하여 실시되며, 수집된 자료는 전산처리되어 통계작성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쓰이지 않으니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표는 1992년 8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의료기관마다 1매씩 작성하여 주십시오.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p>① 기관명 :</p> <p>② 소재지 :</p> <p>③ 전화번호 : ④ 개설일자 : 19 . . .</p> <p>⑤ 자료처리번호 (보사부기입)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p> <p>⑥ 표본번호 (보건소기입)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p> <p>⑦ 의료보험요양 취급기관번호 <input type="text"/></p> <p>⑧ 설립구분 다음 보기중 해당되는 것의 번호에 ○표를 하고 해당란에 그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p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 ></p> <table style="width: 100%;"> <tr><td>01 국립</td><td>06 사단법인</td><td rowspan="5" style="vertical-align: middle;">→ <input type="text"/></td></tr> <tr><td>02 국립대학</td><td>07 재단법인</td></tr> <tr><td>03 공립</td><td>08 의료법인</td></tr> <tr><td>04 학교법인</td><td>09 기타법인</td></tr> <tr><td>05 특수법인</td><td>10 개인</td></tr> </table> </div> <p>⑨ 가동병상수 허가와는 관계없이 입원환자를 위하여 실제로 가동 가능한 병상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을 기입)</p> <p>1. 일반병상 → <input type="text"/> 병상</p> <p>2. 신생아병상 → <input type="text"/> 병상</p> <p>3. 합계 → <input type="text"/> 병상</p>	01 국립	06 사단법인	→ <input type="text"/>	02 국립대학	07 재단법인	03 공립	08 의료법인	04 학교법인	09 기타법인	05 특수법인	10 개인	<p>⑩ 종사자수 :</p> <p>* 정규직 및 일반직, 상근자 및 비상근자 모두를 포함하여 1992. 8.26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p> <p>*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가 있는 병원에 한하여 의사를 전문의, 전공의, 일반의로 구분하여 주십시오.</p> <table style="width: 100%;"> <tr><td>1. 의사</td><td><input type="text"/></td><td>명</td><td rowspan="3">전문의</td><td><input type="text"/></td><td>명</td></tr> <tr><td>2. 치과의사</td><td><input type="text"/></td><td>명</td><td>전공의</td><td><input type="text"/></td><td>명</td></tr> <tr><td>3. 한의사</td><td><input type="text"/></td><td>명</td><td>일반의</td><td><input type="text"/></td><td>명</td></tr> <tr><td>4. 약사</td><td><input type="text"/></td><td>명</td><td></td><td></td><td></td></tr> <tr><td>5. 조산사</td><td><input type="text"/></td><td>명</td><td></td><td></td><td></td></tr> <tr><td>6. 간호사</td><td><input type="text"/></td><td>명</td><td></td><td></td><td></td></tr> <tr><td>7. 간호조무사</td><td><input type="text"/></td><td>명</td><td></td><td></td><td></td></tr> <tr><td>8. 임상병리사</td><td><input type="text"/></td><td>명</td><td></td><td></td><td></td></tr> <tr><td>9. 방사선사</td><td><input type="text"/></td><td>명</td><td></td><td></td><td></td></tr> <tr><td>10. 물리치료사</td><td><input type="text"/></td><td>명</td><td></td><td></td><td></td></tr> <tr><td>11. 작업치료사</td><td><input type="text"/></td><td>명</td><td></td><td></td><td></td></tr> <tr><td>12. 치과기공사</td><td><input type="text"/></td><td>명</td><td></td><td></td><td></td></tr> <tr><td>13. 치과위생사</td><td><input type="text"/></td><td>명</td><td></td><td></td><td></td></tr> <tr><td>14. 의무기록사</td><td><input type="text"/></td><td>명</td><td></td><td></td><td></td></tr> <tr><td>15. 영양사</td><td><input type="text"/></td><td>명</td><td></td><td></td><td></td></tr> <tr><td>16. 조리사</td><td><input type="text"/></td><td>명</td><td></td><td></td><td></td></tr> <tr><td>17. 기타요원</td><td><input type="text"/></td><td>명</td><td></td><td></td><td></td></tr> <tr><td>총계(1-17)</td><td><input type="text"/></td><td>명</td><td></td><td></td><td></td></tr> </table>	1. 의사	<input type="text"/>	명	전문의	<input type="text"/>	명	2. 치과의사	<input type="text"/>	명	전공의	<input type="text"/>	명	3. 한의사	<input type="text"/>	명	일반의	<input type="text"/>	명	4. 약사	<input type="text"/>	명				5. 조산사	<input type="text"/>	명				6. 간호사	<input type="text"/>	명				7. 간호조무사	<input type="text"/>	명				8. 임상병리사	<input type="text"/>	명				9. 방사선사	<input type="text"/>	명				10. 물리치료사	<input type="text"/>	명				11. 작업치료사	<input type="text"/>	명				12. 치과기공사	<input type="text"/>	명				13. 치과위생사	<input type="text"/>	명				14. 의무기록사	<input type="text"/>	명				15. 영양사	<input type="text"/>	명				16. 조리사	<input type="text"/>	명				17. 기타요원	<input type="text"/>	명				총계(1-17)	<input type="text"/>	명				<p>⑪ 외래환자수 (1992. 8.26 의 1일간) 외래환자조사표에 기입된 환자수 → <input type="text"/> 명 * 관계 자료와 대조하여 주십시오</p> <p>⑫ 입원환자수 (1992. 8.26. 24:00 현재) 관련대장이나 진료기록부등을 참고로 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p> <p>(1) 1992. 8.26 당일 입원한 환자수 → <input type="text"/> 명</p> <p>(2) 1992. 8.26 이전부터 입원하여 1992. 8.26 현재 입원중인 환자수 → <input type="text"/> 명</p> <p>(3) 총계 : (1)+(2) → <input type="text"/> 명</p> <p>⑬ 퇴원환자수 (1992. 6. 1- 6.30 의 1개월간) 퇴원환자조사표에 기입된 환자수 → <input type="text"/> 명 * 관계 자료와 대조하여 주십시오.</p> <p>⑭ 조사표매수</p> <p>(1) 외래환자 조사표 : 매</p> <p>(2) 퇴원환자 조사표 : 매</p> <p>⑮ 작성자 작성자</p> <p>직 명 성 명 인</p> <p>⑯ 대표자성명 성명 직인</p> <p>및 직인</p> <p>⑰ 조사결과 (보건소기입) 완료 폐업 휴업 이전 불응 기타</p> <p>⑱ 보건소장 보건소장 직인 검 토</p>
01 국립	06 사단법인	→ <input type="text"/>																																																																																																																							
02 국립대학	07 재단법인																																																																																																																								
03 공립	08 의료법인																																																																																																																								
04 학교법인	09 기타법인																																																																																																																								
05 특수법인	10 개인																																																																																																																								
1. 의사	<input type="text"/>	명	전문의	<input type="text"/>	명																																																																																																																				
2. 치과의사	<input type="text"/>	명		전공의	<input type="text"/>	명																																																																																																																			
3. 한의사	<input type="text"/>	명		일반의	<input type="text"/>	명																																																																																																																			
4. 약사	<input type="text"/>	명																																																																																																																							
5. 조산사	<input type="text"/>	명																																																																																																																							
6. 간호사	<input type="text"/>	명																																																																																																																							
7. 간호조무사	<input type="text"/>	명																																																																																																																							
8. 임상병리사	<input type="text"/>	명																																																																																																																							
9. 방사선사	<input type="text"/>	명																																																																																																																							
10. 물리치료사	<input type="text"/>	명																																																																																																																							
11. 작업치료사	<input type="text"/>	명																																																																																																																							
12. 치과기공사	<input type="text"/>	명																																																																																																																							
13. 치과위생사	<input type="text"/>	명																																																																																																																							
14. 의무기록사	<input type="text"/>	명																																																																																																																							
15. 영양사	<input type="text"/>	명																																																																																																																							
16. 조리사	<input type="text"/>	명																																																																																																																							
17. 기타요원	<input type="text"/>	명																																																																																																																							
총계(1-17)	<input type="text"/>	명																																																																																																																							

보 건 사 회 부
1992년 환자조사 조사표Ⅱ (외래환자)

① 기 관 명	
② 자료처리번호 (보사부기입)	□□□□ - □□□□
③ 표본번호 (보건소기입)	□□□□ - □□□□
④ 의료보험요양 취급기관번호	□□□□□□□□

이 조사표에는 1992년 8월 26일 (00:00시 - 24:00시)에 내원하여 외
래진료를 받고 당일로 귀가한 환자 전원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02 조사표매수	매	중	매
03 작성자직명			
04 작성자성명	인		

⑤ 일련 번호	⑥ 성 별		⑦ 출생년월일 (모르는 때에만 연령 기입)		⑧ 환 자 주 소			⑨ 질 병 분 류		⑩ 진 료 비 지 불 방 법						⑪ 진 료 기록 번호	
	1. 남	2. 여	출 생 년	연 령 월	시·도	구·시·군	지역번호	진 단 명 및 사유	분 류 번호								
□□□□	1	2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	1	2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	1	2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	1	2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	1	2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	1	2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	1	2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	1	2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	1	2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	1	2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	1	2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	1	2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	1	2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	1	2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	1	2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	1	2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⑨의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1979) pp. 19-66에 의한다. ⑥항 ⑩항은 해당번호에 〇표

보건사회부

1992년 환자조사 조사표 III (퇴원환자)

① 기관명	
② 자료처리번호 (보사부 기입)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③ 표본번호 (보진소 기입)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④ 의료보험요양 취급기관번호	<input type="text"/>

이 조사표에는 199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개월간에 퇴원환 환자 전원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⑬ 퇴원환자수 : 명

⑭ 퇴원환자가 없는 경우의 사유:

1. 입원진료 가능하나 퇴원환자 없었음.
2. 입원진료 불가능 3. 폐업
4. 휴업 5. 이 전 6. 기타
폐업, 휴업, 이전의 경우 아래 난에 휴·폐업, 이전일자 및 이전장소 등을 기입한다.

⑤ 일련 번호	⑥ 성별 1. 남 2. 여	⑦ 출생년월 모르는 때에는 연령만 기입한다.		⑧ 환자 주소				⑨ 질병분류 진료기록부에 2가지 이상의 진단명 및 사유가 기입된 경우에는 입원의 직접 원인이 된 것은 (1)에 기입하고, 기타 진단명은 (2), (3)에 기입한다.				⑩ 입원년월일			⑪ 6월 퇴원 일자	⑫ 치료결과 1. 완쾌 또는 호전 2. 호전안됨 3. 진단 불 4. 가망없는 퇴원 5. 사망	⑬ 퇴원형태 1. 정상퇴원 2. 자의퇴원 3. 전 원 4. 탈 원	⑭ 입원경로 1. 외래 2. 응급실 3. 기 *(신생아 포함)	⑮ 내원경위 1. 직접내원 2. 다른기관 에서 의뢰	⑯ 진료비 자불방법 1. 전액자비 2. 의료보험 3. 의료보호 4. 산재보험 5. 자동차보험 6. 기타	⑰ 진료 기록 번호			
		출 년	생 월	연령	사·도	구·시·군	지 번	역 번호	(1)		(2)		(3)									년	월	일
									입원의 직접 원인이 된 진단명 또는 사유	분류 번호	기타 진단명	분류 번호	기타 진단명	분류 번호										

⑨의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1979) pp. 19~66에 의한다.
 ⑥, ⑫, ⑬, ⑭, ⑮, ⑯항은 해당번호를 기입한다.
 * 신생아의 퇴원은 미숙아 또는 질병치료를 받는 경우만 해당된다.

⑳ 조사표매수	매	중	매
㉑ 작성자직명			
㉒ 작성자성명			인